

모두 발언

2025. 5. 1. (목) 10: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되신
금융보안원 오중효 상무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I. 그간 경과

그동안 정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여건에 대응해
“입법 정비”와 “관행 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규제 불확실성 해소,
가상자산 생태계 안착 등을 위하여
토큰증권(STO)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 - 이용자 - 시장’을 아우르는
통합법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시장 관행·규율 개선 등에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확정하고,
업계 자율의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은행연합회, DAXA,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통해
로드맵 이행과 모범사례 개정을 위한
실무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III. 주요 논의사항

오늘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물인
관계기관 검토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먼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때 적용되는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동시에,
자금세탁 방지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적절한 내부통제체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부 적정성 등을 사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원활한 가상자산 현금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기부 대상을 한정하고
‘수령 즉시 현금화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법인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국내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하여
기부자에 대한 **고객 확인**을 중첩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가상자산 매매 중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에 따른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한 사유를
인건비, 납세 등 ‘운영경비 충당 목적’으로 한정하고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은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영향을 고려해 매각 가능 가상자산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하는 한편,
일일 매각한도(예: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등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다음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지원 직후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매매 개시 후 일정 기간 시장가 주문 제한 등
필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거래량·시가총액이 미미한 종목(이른바 ‘**좀비코인**’)의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거래소별 상황을 고려한 자체 기준 마련으로
신속한 선별 및 거래지원 종료를 유도하겠습니다.

용도·가치가 불분명한 ‘**میمکوین**’의 경우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적격 해외거래소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투기성 높은 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거래지원을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만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IV. 맺음말

오늘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이후
가이드라인과 개정안의 시행 및 적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하고,
6.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모범사례 개정안을 차질없이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토큰증권(STO) 제도화는
증권의 발행 및 유통체계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련 법률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상자산위원회 출범과 함께 논의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이
실제 현장에 첫 걸음을 뚫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상자산 정책의 초석을 다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위원회가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논의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